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520-10

2021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최고경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해주신 최고경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적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혁신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관련 정보, 세법 개정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기업의 세무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1. 3.

국세청장

Contents_ 2021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I.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3
1.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4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5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6



II. 기업경영과 세무	7
1. 절세와 탈세.....	8
2.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9
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10
4.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11
5. 분식결산과 세무.....	12
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13
7. 납부기한 등의 연장.....	14
8.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15
9.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17
10.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18
11.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19
12.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20
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21
14.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22
15.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7
16.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28
17. 해외 직접투자자 세금.....	29
18.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31
19.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33
20.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34
2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35
22.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37
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38



III.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등	39
1. 법인세.....	40
2. 부가가치세.....	42
3. 종합부동산세.....	43
4. 주식양도와 세금.....	44
5. 원천징수하는 세금.....	48
6.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49
7. 기부장려금 제도.....	50
8. 명의신탁주식 실세소유자 확인제도.....	51



IV. 주요 세법 개정내용	53
-----------------------------	----

I.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1.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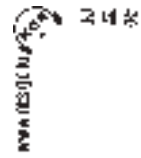
I.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1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은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회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 10년을 선도하기 위한 국세행정 혁신을 총력 추진'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며 탈세 및 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

-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 경제회복 노력 뒷받침을 위해 전체 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하게 감축 운영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연장 시행하겠습니다.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적시성 있는 세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힘이 되는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홈택스 2.0 본격 추진, 상담·민원 절차의 근본적 개선 등 납세서비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성실납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및 도움정보 제공 등 납세서비스 품질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등을 통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로 국민 중심적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체납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악의적 체납 강력 대응 및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국세 행정의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고, 민·관·연 협업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뉴노멀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실질적 성과향상을 뒷받침하도록 인사시스템을 혁신하는 등 일할 맛 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친화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달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축소하여 나가겠습니다.

※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을 위한 「세무지원 소통의 달」 운영

-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소통을 활성화하고, 매 분기 한 달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하여 납세자의 불편,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청년·중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지원을 활성화하여,
 -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

-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상담 및 민원 등 모든 납세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서비스 세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신고내용 확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고,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한 신고수준 향상과 신고 후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사전지원’ 본연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불성실 사업자 위주의 세무조사

-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여 실시하되
 - 조사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사기간 최소화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운영

-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 짧은 조사 기간 동안 회계 및 세무분야 등에 대한 지도·상담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탈루 혐의 시 조사 실시

-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최소화하되
 - 구체적 탈루 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Ⅱ. 기업경영과 세무

1. 절세와 탈세
2.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4.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5. 분식결산과 세무
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7. 납부기한 등의 연장
8.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9.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10.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11.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12.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14.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15.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6.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17. 해외 직접투자자와 세금
18.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19.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20.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2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22.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Ⅱ. 기업경영과 세무

1 절세와 탈세

* 절세와 탈세의 구분

-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법인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 성실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에 대해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Ⅱ. 기업경영과 세무

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가산세 포함)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보소득의 사외유출과 경영전략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우 회사 내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세액공제하여 주므로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급여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II. 기업경영과 세무

5 분식결산과 세무

*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 분식결산과 세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식결산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세무상 제재를 강화 하였습니다.



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3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없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되어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으로 통보되고,

결국,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Ⅱ. 기업경영과 세무

7 납부기한 등의 연장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⑦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파,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⑧ 위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
 -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가능(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8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100억원 한도)을 증여 받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세 부과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30의6)
-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증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

-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8②)
- 가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하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Ⅱ. 기업경영과 세무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9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기	감면 비율	수정신고 시기	감면 비율
1개월 이내	9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15. 2. 23. 부터 전자불복청구제도 시행



Ⅱ. 기업경영과 세무

10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행정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인용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관점에서 분석하여 인용된 원인이 사실조사 소홀, 법령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 조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잘못된 과세를 유발하는 법령·제도 등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조사나 과세자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사실판단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각종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도 과세 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관련 누리집] ➡ [국세법령정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 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세무 문제로 인한 사업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 · 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Ⅱ. 기업경영과 세무

12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는

중소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정기·수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 사업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법인 중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세무컨설팅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 관계 자료 등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세무컨설팅' 조회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협약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은 1년, 500억~1,000억원 미만은 2년이며,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협약은 유지됩니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체결 법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① 전담팀에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One-Stop으로 진행하고, 과세자료와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내용대로 이행한 경우, 해당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됩니다.
- ③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 이행법인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서 실시하며, 법인세 신고기한일까지 신청



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202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⑭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 * (홈택스)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찾기<연구>조회하기>사전심사신청
신청대상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 세액공제 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첨 부 서류	• ①연구개발비 명세서 ② 연구개발 보고서 ③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또한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제도 개요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샘플로 작성하여 게재

* 경로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R&D세액공제사전심사제도



II. 기업경영과 세무

14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구 분	내 용		수도권		수도권 이외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지역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 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	수도권 이외지역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창업중소 기업감면 (조특법§6)	5년간 50~100% 세액감면		50%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만)	50% ~ 100%* *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7)	매년 5~30% 세액감면 (최대 1억원 한도)	소기업	- 의료, 도 · 소매업 10% - 상기 업종외 20%		- 의료, 도 · 소매업 10% - 상기 업종외 30%
		중기업	- 감면 혜택 없음 (지식기반산업은 10%)		- 의료, 도 · 소매업 5% - 상기 업종외 15%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대체투자는 공제 허용, 증설투자는 공제 배제 (하단 참고)	공제 허용	

※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일반 · 혁신) · 김제지평선 · 장흥 바이오 식품 · 북평(국가 · 일반) · 강진 · 정읍 첨단과학 · 동함평 · 세풍일반(1단계)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폐광진흥지구 입주 관광숙박업 영위기업 등 포함)은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 (조특법§64).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 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 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 터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 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 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2의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 해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로 이전하여 2021.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04의24)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증설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음 (조특법 §130)

구 분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1990.1.1. 이후 사업개시
일반기업	×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	× (정보통신장비 등 ○)
중소기업		×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



✳ 중소기업과 세금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 분	내 용
세액감면 및 공제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사회보험료의 50~100%)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30%)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30%)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2(0.1%), 10%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임금감소액의 10%+보전액의 15%)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10%)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 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 -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등



Ⅱ. 기업경영과 세무

✳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세제혜택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단 계	주요 내용
신규 고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2백만원(최대 3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100% ← 종전 50~75%(1년)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 75%, 그 외 50%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 – 3년간 70% (청년 5년간 90%)
재고용	• 특성화고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고용 유지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15%
임금 증대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 1천만원(중견 7백만원)



✳ 시설투자에 따른 세제혜택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전</th><th>개 정</th></tr> </thead> <tbody> <tr> <td>① R&D 설비(1/3/7)</td><td>〈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td></tr> <tr> <td>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td><td>• (공제대상) ①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② 일부 유형(①번 제외)·무형자산</td></tr> <tr> <td>③ 안전 설비(1/5/10)</td><td></td></tr> <tr> <td>④ 에너지절약 시설(1/3/7)</td><td>• (공제방식)기본공제(1/3/10%)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3%)</td></tr> <tr> <td>⑤ 환경보전 시설(3/5/10)</td><td>⇒</td></tr> <tr> <td>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td><td>•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td></tr> <tr> <td>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td><td></td></tr> <tr> <td>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td><td></td></tr> <tr> <td>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td><td>※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td></tr> <tr> <td>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td><td>('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td></tr> <tr> <td>※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td><td></td></tr> </tbody> </table>	종 전	개 정	① R&D 설비(1/3/7)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 (공제대상) ①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② 일부 유형(①번 제외)·무형자산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 (공제방식)기본공제(1/3/10%)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3%)	⑤ 환경보전 시설(3/5/10)	⇒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종 전	개 정																								
① R&D 설비(1/3/7)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 (공제대상) ①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② 일부 유형(①번 제외)·무형자산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 (공제방식)기본공제(1/3/10%)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3%)																								
⑤ 환경보전 시설(3/5/10)	⇒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기타 조세지원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 R&D에 따른 세제혜택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20~40%(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지출액 × 0~2%(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 증가분방식: (당해연도 지출액 -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기타 조세지원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



Ⅱ. 기업경영과 세무

✳ M&A와 세금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 •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 •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등



15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도개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 소득(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과세대상 법인

-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신고

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댄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과세방식

투자포함 방식,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제외방식은 1년간 계속 적용

- 투자포함방식 : $[기업소득 \times 70(2020년: 65)\% - (투자금액 + 임금증가금액 + 상생협력지출금액)] \times 20\%$
- 투자제외방식 : $[기업소득 \times 15\% - (임금증가금액 + 상생협력지출금액)] \times 20\%$

*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 §45의9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



Ⅱ. 기업경영과 세무

16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제도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개인의 경우 2011년 귀속부터 시행하였으며,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 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

- i)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 ii)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iii)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적용제외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 기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니 신고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17 해외 직접투자자와 세금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 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합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 직접투자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그 고유번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료	제출요건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시 ㉠ 지분을 10% 이상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직·간접 지분을 10% 이상 &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 손실거래 명세서	위 ②-⑥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50억원(법인)/10억원(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소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법인)/20억원(개인) 이상인 경우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Ⅱ. 기업경영과 세무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불이익(국조법§6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개인)과태료 부과기준 : 건별 5백만원
 - (법인)과태료 부과기준 : 건별 1천만원
 - (대상 확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
 -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미 · 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외국환거래법§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봄
 - (과태료 금액) 미 · 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18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 해외부동산의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건의 해외주택 임대도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45%의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해외부동산(권리 포함)을 취득·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해외 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기간 중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의 세금문제

해외주식^{*1)}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액주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외주식은 예정신고의무 없음)·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 주식^{*2)}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3)}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확정신고 합니다.

* 1) 해외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 3)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II. 기업경영과 세무

[국내·해외 주택임대 관련 신고방법 비교]

구 분	국내주택		해외주택	
과세요건 (주택수기준)	주택 수 ¹⁾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²⁾	비과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 ³⁾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또는 국내·해외주택을 합산하여 계산 2) 해외주택 및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국내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월세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21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당 없음	
	* '20년 귀속부터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장 현황신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해당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방법 (수입금액 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납부			
	수입금액		신고방법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 중 선택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6~45%)	
해외부동산 투자 관련 명세서 신고	해당 없음		해외부동산의 취득·운용·처분 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신고 의무(5월)	
가 산 세	구 분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는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부정과소신고는 40%)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과소신고한 경우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무·과소납부 세액 × 납부지연 일수 × (25/100,000)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 × 0.2% (해외주택은 제외)		
「해외부동산 취득 ·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미(거짓)제출시 과태료	구 분	과태료*	한도액	비 고
	해외부동산 (처분신고는 '19년 과세 연도분부터 시행)	· (취득) 취득가액의 10% · (투자운용) 취득가액의 10% · (자금출처) 미소명금액의 20%	1억원	· 취득(처분)가액 2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
	* '19년 과세연도 이전분은 취득·투자운용·처분가액의 1%(한도:5천억원)			



19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역외자산 양성화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2~\$57, \$62)

*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 신고의무자(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
 - 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증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평가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18년 보유분(19년 신고분)부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17년 보유분까지는 10억원)
- 신고방법 : 6월중(6.1~6.30) 전년도 보유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신고내용
 -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회사명·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 미신고시 제재 :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내용]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율
20억이하	해당금액 × 10%
20억초과 50억이하	2억원 + 20억 초과금액 × 15%
50억초과	6억5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20억원 한도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신고·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소명시 과태료(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Ⅱ. 기업경영과 세무

20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규모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다국적기업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 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 같은 법 시행령§34)

* 보고서 종류 · 내용

- **개별기업보고서** : 계열그룹 내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국외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및 재무 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 그룹 전체의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내역, 금융 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 보고서** :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현지법인 목록 및 주요 사업활동 내용

*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 개별 · 통합기업보고서: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 (개별 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 원 초과
 -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 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 ①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 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 ②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 최종 모회사 소재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모회사 소재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 보고서 각 건별 3천만 원



2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45의3)

* 증여자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1한 비율이 30%(중견40%·중소법인 50%)*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2 중견·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초과하고 그 금액이 1천억 초과하는 경우 포함(상속세및증여세법§45의3①1호나목2))

*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견·중소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 5\%(20\%,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5\%, 10\%)))$$

*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 되는 날('19.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0.6.30.)



II. 기업경영과 세무

2020년 신고분,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 ①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 ②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2단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30%(50·40%) 초과여부 확인

- ① 수혜법인의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 ②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 ③ 과세제외매출액 확인
- ④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확정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 총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 그 비율이 30%(중소 50%·중견기업 40%) 초과 여부 확인

30%(50·40%)초과



이하

→ 과세제외

3단계

수증자 확정[주식보유비율 3%(10%) 초과자]

-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 ②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3%(10%)초과



이하

→ 과세제외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

- ① 세후영업이익
-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중견 20%·중소기업 50%)

* ① 및 ② 산정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감안하여 계산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text{수혜법인 총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 \times 100$$

- ③ 수증자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 0%(중견 5%·중소기업 10%)
- ④ 신고기한 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 ⑤ 증여의제이익 산정 : (①×②×③)-④
- 주식 직·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 ㉠ 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 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익



22 일감뎀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뎀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법인,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 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의4)

* '16년1월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20년 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1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begin{aligned} &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중 상당액}) \\ &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times 12] \times 3 \end{aligned}$$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 $\times$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 / 전체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 (정산사업연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하 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 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당초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함)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II. 기업경영과 세무

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도개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입니다.

* 세액공제 요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② 20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것
 - 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일 것
 - ④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 공제금액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

* 공제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예: '20년 인하분 → '21.6.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